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70
----------	------

제출일자 : 2022. 10. 10

제 출 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안 제4조)
- 다. 운영의 위탁 및 운영지원(안 제5조, 안 제6조)
- 라. 수탁기관의 의무 및 지도·감독(안 제7조, 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2) 「지역보건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2023년 본예산(안) 10억 원 반영

다. 기타

- (1) 입법예고(2022. 9. 8.~ 9. 28.)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6)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등”이란 정신의료기관 및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6. “정신건강전문요원”이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구역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상태평가 및 사례관리
2. 사례관리를 위한 개별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조정
3.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정신질환 만성화 방지
4.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위기개입 사업
5.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유족 지원 사업
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7.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
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
9. 법 제52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퇴원 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10.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교육훈련 등
11.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운영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관리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모든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여 그를 파손·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른 위탁의 취소, 제9조에 따른 위탁협약의 해지 및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위탁협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기관이 법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센터시설·장비 등을 파손·훼손하거나 센터를 이용하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준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사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2019. 12. 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에 관한 사항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1. 사업개요

- 기 간 : 2023년 ~ 계속
- 주요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비용

2. 비용발생 요인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

3. 관련조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비용

나. 추계 결과 : 5년간 5,216,220천 원 정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사업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5,216,220천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보조금(기금·시비) 및 자체예산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지 붙임**6.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장 최윤서**

[별 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 입		1,043,244	1,043,244	1,043,244	1,043,244	1,043,244	5,216,220
의존재원		782,433	782,433	782,433	782,433	782,433	3,912,165
군 비		260,811	260,811	260,811	260,811	260,811	1,304,055
세 출		1,043,244	1,043,244	1,043,244	1,043,244	1,043,244	5,216,220
민간위탁금		1,043,244	1,043,244	1,043,244	1,043,244	1,043,244	5,216,220
재원 조달		1,043,244	1,043,244	1,043,244	1,043,244	1,043,244	5,216,220
의존 재원	소 계	782,433	782,433	782,433	782,433	782,433	3,912,165
	기 금	521,622	521,622	521,622	521,622	521,622	2,608,110
	시 비	260,811	260,811	260,811	260,811	260,811	1,304,055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군 비		260,811	260,811	260,811	260,811	260,811	1,304,055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